##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810 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박용갑 • 문대림

김교흥ㆍ허 영ㆍ주철현

이원택 · 송옥주 · 민병덕

서영석 · 강준현 · 김우영

박희승 • 백선희 • 정동영

김태선 · 허성무 의원

(17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·사고가 영국, 미국,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'총기 청정국'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,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 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 ·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허 가할 수 있도록 하고,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·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 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"테러이용수단"이란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·총 기류·화생방물질 등을 말한다.

제5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관계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·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허가를 요청한 사항제10조제1항 중 "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·총기류·화생방물질(이하 "테러이용수단"이라 한다),"을 "테러이용수단 및"으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「삼차원프 린팅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하여 테러이 용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·유통·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
- 2.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총포의 제작· 소지·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·홍보
- 3. 삼차원프린팅 사용 관련 정보의 수집·관리 제12조제1항 중 "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"을 "테러이용수단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9. "테러이용수단"이란 테러의
	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
	발물・총기류・화생방물질 등
	<u>을 말한다.</u>
제5조(국가테러대책위원회) ①・	제5조(국가테러대책위원회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	3
사항을 심의 • 의결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관계기관이 새로운 기술로
	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
	<u>험성을 조사·분석하기 위한</u>
	목적으로 사업의 허가를 요청
	<u>한 사항</u>
<u>4.</u> (생 략)	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	제10조(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
리대책의 수립) ① 관계기관의	리대책의 수립) ①
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	
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	
용하는 시석 및 <u>장비(이</u> 하 "테	

러대상시설"이라 한다)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<u>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·총</u>기류·화생방물질(이하 "테러이용수단"이라 한다),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----<u>테러이용수단</u> <u>및----</u>

② 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하여 테러이용수단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작·유통·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호의행위를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

  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

   구축
- 2.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총포의 제작·소지·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·홍보
- 3. 삼차원프린팅 사용 관련 정 보의 수집·관리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<u>②</u> (생 략)

제12조(테러선동·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)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·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, 상징적 표현물,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 이나 방송·신문,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,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(생 략)

제12조(테러선동・선전물	긴급
삭제 등 요청) ①	
테러이용수단	
② (현행과 같음)	